

#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(의안번호 제 30호, 2004. 8. 4)

총 무 위 원 회

2004. 9. 17

### 1. 심사 경과

가. 2004. 8. 4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8. 17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### 2. 제안 설명(사회복지과장 임귀자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저소득주민의 자활·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찬조금 수입 기금조성 재원 삭제 (안 제3조 및 제10조)
- 융자금 이자율 하향 조정 (안 제5조제3항)
  - 이율 : 연5% → 3%, 연체이율 : 연15% → 9%

### 3. 관계 법령

- 기부금품모집규제법

### 4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개정조례(안) 제3조의 기금조성재원 중 찬조금수입을 삭제하고 기금조성재원을 시 출연금, 융자금의 회수액,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·접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찬조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

며

- 동 조례 제5조3항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당초 연5% 에서 3%로하고 연체이율은 연15% 에서 9%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적게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개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5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위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김석관 위 원	우리시는 1가구당 5,00만원한도 내에서 용자를해 주는데 1,000만원으로 증액할 수는 없는지?	사회복지과장 임귀자	1가구당 용자한도를 1,000만원으로 했을 경우 상환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
김현철 위 원	진주시의 경우 용자금의 이자는 3%로하고 연체이자는 6%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?	“	시중의 제2금융권이자가 7~8%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 결과 연체이자는 9%로 결정 했음

### 6. 심사 결과 : 수정 가결(수정안 별첨)

### 7. 소수 의견 : 없 음

#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4. 9. 14

제안자 : 이인효위원외6인

## 1. 수정 이유

-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적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## 2. 주요 골자

- 융자금 연체이자를 연9%에서 연 6%로 하향 조정

## 3. 수정안

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중 “연9%”를 “연6%”로 한다

## 4. 현행·개정안·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수정(안)
제5조(융자금액등) ① ~ ② (생략) ③ …… 다만,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터 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	제5조(융자금액등) ① ~ ② (생략) ③ …… 다만,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연 9퍼센터 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	제5조(융자금액등) ① ~ ② (생략) ③ …… 다만,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터 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